2026년 장애인일자리(복지일자리) 참여자 4차 추가모집 공고

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(복지일자리)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
1. 근무조건 및 모집내용

▢ 근무기간 : 2026년 9월 1일 ~ 2026년 12월 31일
▢ 근무시간 : 주 14시간 이내 근무(월 56시간)
▢ 보　　수 : 월 577,920원(고용보험 본인부담금 포함. 산재보험, 고용보험 필수 가입)
※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

▢ 수행직무 및 모집 인원 : 3명

순	배치기관(근무지)	수행 직무	선발인원(명)	비고
1	방아골종합사회복지관 (서울마음편의점 도봉2호점)	공간지기	1	방문객 응대 및 안내, 공간지킴이 등 ※화(4시간), 수(5시간), 토(5시간)근무
2	보호작업장 인강원	세탁업무보조	1	세탁물(타올, 가운, 베개커버, 이불, 시트) 분류 및 접기 ※오전근무(월,화,수,금 3시간, 목 2시간)
3	주간보호시설 인강원	승하차도우미	1	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 약자들이 차량을 타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승하차 및 이동과정을 도는 업무 ※오전/오후 택1 근무(월~금)
합 계			3	-

※ 상기 근무지 및 수행 직무를 확인하여 참여신청서 제출(근무지별로 면접 실시)

▢ 모집 기간 : 2026. 8. 12.(수) ~ 8. 18.(화) 18:00까지
▢ 선발 면접 일시 : 2026. 8. 24.(월) 10:30~, 면접시간 개별 안내 ※일정변경 될 수 있음
▢ 선발 면접 장소 :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회의실 ※장소변경 될 수 있음
▢ 참여자 선정 안내 : 2026. 8. 25.(화) 오후 개별 안내

2.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

▢ 신청자격

① 복지일자리(참여형) :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

② 복지일자리(특수교육-복지연계형) : '26년 기준 미취업 전공과 학생 (특수교육 대상자)

＊ 다만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, 실습 가능 시점부터 참여가능

▢ 선발방법 :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(서류 및 면접 심사)에 따른 선발

<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>

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(**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**)

※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**(ex. '26년 신청자의 경우, '26년 7월 12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)**

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

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, 기관 단체의 대표, 임직원

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

※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『근로계약서』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

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

※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*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

＊ **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:**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, 만 65세 이상인 자, 기초생활 수급자,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,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

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

※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1조의2(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)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

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,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

※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[의제01254-15864호(1987.6.26.)]

3. 제출서류 및 접수처

▢ 필수 서류 <첨부파일 제출서류 참조>

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(희망 배치기관, 직무, 자필서명 필수) 1부 : 붙임 서식 참고

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(자필서명 필수) : 붙임 서식 참고

- 장애등록 여부,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, 장기요양판정여부, 미취업 상태 여부,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

③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(자필서명 필수) 1부 : 붙임 서식 참고

※ 필수 제출 서류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,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(ex. 도장 등)

※ 신청자의 '장애인등록여부' 및 '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'은 시군구에 의뢰하여 조회

④ 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1부

▢ 아래 서류는 해당자의 경우만 제출

<table>
<tr><th>구분</th><th>증빙서류</th></tr>
<tr><td>① 특수교육-복지연계형
참여 신청자</td><td>- 재학증명서</td></tr>
<tr><td>② 자격증 소지자</td><td>- 관련 자격증 사본 1부
※ 직무 관련 자격증 : 컴퓨터활용능력, 워드프로세서 자격증, 정보기술자격(ITQ),
바리스타 자격증 등</td></tr>
<tr><td>③ 졸업예정자</td><td>-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
※ 졸업예정증명서 등</td></tr>
<tr><td>④ 여성가장</td><td>
<table>
<tr><th>구 분</th><th colspan="2">첨 부 서 류</th></tr>
<tr><td>공통사항</td><td colspan="2">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</td></tr>
<tr><td rowspan="10">선택사항</td><td>부모 부양시</td><td>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
(의사진단서, 생계급여수급자 등)</td></tr>
<tr><td>가출 . 행방불명</td><td>실종신고서</td></tr>
<tr><td>장애</td><td>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명서,
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</td></tr>
<tr><td>질병으로 요양 중</td><td>의사의 진단서</td></tr>
<tr><td>군복무</td><td>복무확인서</td></tr>
<tr><td>학교 재학</td><td>재학증명서</td></tr>
<tr><td>교도소 입소</td><td>수용증명서, 형확정판결문</td></tr>
<tr><td>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
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</td><td>직업안정기관(고용센터) 또는 자치단체장의
확인서</td></tr>
<tr><td>이혼소송 제기</td><td>이혼소송확인서</td></tr>
<tr><td>기타 가족 생계 부양</td><td>통·반장의 확인서</td></tr>
</table>
</td></tr>
<tr><td>⑤ 장애인
지역사회자립지원
시범사업 대상자</td><td>-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</td></tr>
</table>

구분	증빙서류
⑥ 취업지원대상자	-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※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 제16조,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1조,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5조,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7조의9,「5·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2조,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
⑦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등	- 상장사본(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) - 상장사본(장애인일자리관련 시·도지사 및 시·군·구청장 표창) ※ 최근 3년(23~25년) 이내 사용가능

(참고) 여성가장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을 말함

① 미혼여성이거나,
② 기혼여성이나 이혼·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
③ 신체·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*하는 여성

* 18세 미만(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)인 자녀를 양육, 60세 이상의 (조)부모 또는 배우자의 (조)부모를 부양, 장애·질병이 있는 동거가족(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)을 부양

※ 관련근거 :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-자치단체 합동지침

▢ **접수방법 : 방문접수(휴일 제외), 이메일 접수(휴일 무관)**

① 방문접수 :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통합사무실

※ 방문접수 시 담당자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사전 전화예약 필수(02-6952-1751)

※ 주소 :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들로 664-23

② 이메일 접수 : 기관 이메일(dbwc0926@gmail.com) 제출 후 필히 확인 전화

4. 기타 참고사항

▢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(1년) 동안 '적극적인 구직활동'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.(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)

▢ **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**

※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고(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)

[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] *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(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)

- 24세 이하에 해당하는 수급(권)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 적용
-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,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% 추가 공제
-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, 북한이탈주민,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% 공제
- 25세~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% 공제

▢ 장기요양등급판정자의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및 상태 등을 고려하여 근로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의사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※ 장애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수급자의 경우, 향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등급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.

▢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

* **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** 제56조(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)
 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(이하 "성범죄"라 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.)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)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·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)해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* **「장애인복지법」** 제59조의3(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)
 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(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)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"취업제한기간")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"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")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해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* **「사회복지사업법」** 제35조의2(종사자)
 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·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. 다만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.
* **「노인복지법」** 제39조의17(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)
  법원은 노인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(약식명령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·면제된 날(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)부터 일정기간(이하 "취업제한기간"이라 한다)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(이하 "노인관련기관"이라 한다)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(이하 "취업제한명령"이라 한다)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(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)하여야 한다. 다만,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,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*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

▢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

*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(직업)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'직업적응훈련, 직업훈련'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,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「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에 따라 **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**에 포함(노동부 차별개선과-2468)

▢ **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반환 받을 수 있음**

[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]

*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

- 이 고지는「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,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

-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일자리사업(복지일자리) 참여자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6년 9월 8일부터 2027년 2월 2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(본인 확인함)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(이메일)으로 제출된 경우나 **구직자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**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
-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팩스(02-6952-1799) 또는 이메일(dbwc0926@gmail.com)로 제출하면,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.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(구직자)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
  * 수신자(구직자)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

-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자 결과발표일 이후 2027년 2월 21일까지(14일 이상~180일 이하)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「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」에 따라 보관·관리될 예정입니다.

▢ **'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' 서식은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안내데스크나 복지관 홈페이지 알림마당(공지사항 게시판)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.**

▢ **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,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.**

▢ 관련문의: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사회서비스&일자리팀 담당자(02-6952-1751)

2026년 8월 12일

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장